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2조 3,480억 3천 1백만원
- 징수결정액 : 27조 878억 9천 만원
- 실제수납액 : 26조 1,401억 6천 5백만원
- 결손처분액 : 2,665억 9천 2백만원
- 미수납액 : 6,811억 3천 3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6.5%(전년도 95.3%)임.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외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22,348,031	27,087,890	26,140,165	245,732	20,860	681,133	117.0%	96.5%
지방세	19,552,425	24,320,748	23,393,017	245,723	20,530	661,478	119.6%	96.2%
보통세	17,495,135	21,363,088	21,116,494	18,910	0	227,684	120.7%	98.8%
취득세	4,632,967	7,493,214	7,470,731	3,436	0	19,047	161.3%	99.7%
주민세	594,465	602,008	594,603	2,193	0	5,212	100.0%	98.8%
재산세	2,998,999	3,241,249	3,203,961	1,205	0	36,083	106.8%	98.8%
자동차세	1,104,975	1,229,352	1,168,621	2,088	0	58,643	105.8%	95.1%
레저세	124,873	22,924	22,924	0	0	0	18.4%	100.0%
담배소비세	564,349	605,200	605,200	0	0	0	107.2%	100.0%
지방소비세	2,041,427	1,942,810	1,942,810	0	0	0	95.2%	100.0%
지방소득세	5,433,080	6,226,331	6,107,644	9,988	0	108,699	112.4%	98.1%
목적세	1,835,212	2,123,313	2,091,894	2,003	0	29,416	114.0%	98.5%
지역자원시설세	300,925	307,998	305,590	124	0	2,284	101.6%	99.2%
지방교육세	1,534,287	1,815,315	1,786,304	1,879	0	27,132	116.4%	98.4%
지난년도시세	222,078	834,347	184,629	224,810	20,530	404,378	83.1%	22.1%
지난년도수입	222,078	834,347	184,629	224,810	20,530	404,378	83.1%	22.1%

예산외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세외수입	228,657	200,227	180,233	9	330	19,655	78.8%	90.0%
경상적세외수입	56,917	35,314	35,192	-	-	122	61.8%	99.7%
공유재산입대료	14,028	8,293	8,271	-	-	22	59.0%	99.7%
기타사용료	2,301	1,548	1,451	-	-	97	63.1%	93.7%
증지수입	724	788	788	-	-	-	108.8%	100.0%
공공예금이자	35,404	20,428	20,428	-	-	-	57.7%	100.0%
기타이자수입	4,460	4,257	4,254	-	-	3	95.4%	99.9%
임시적세외수입	171,740	164,913	145,041	9	330	19,533	84.5%	88.0%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7,957	38,010	30,110	-	-	7,900	52.0%	79.2%
변상금	505	1,363	1,024	-	-	339	202.8%	75.1%
위약금	175	903	903	-	-	-	516.0%	100.0%
체납처분수입	2	32	30	-	-	2	1500.0%	93.8%
그외수입	106,035	107,778	107,662	-	-	116	101.5%	99.9%
자녀연도수입	7,066	16,827	5,312	9	330	11,176	75.2%	31.6%
보조금	1,704	1,670	1,670	-	-	-	98.1%	100.0%
국고보조금	1,704	1,670	1,670	-	-	-	98.1%	10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65,245	2,565,245	2,565,245	-	-	-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835,027	835,027	835,027	-	-	-	100.0%	100.0%
법정잉여금	1,469,407	1,469,407	1,469,407	-	-	-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260,811	260,811	260,811	-	-	-	100.0%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2조 8,856억 8천 9백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2조 8,856억 8천 9백만원
- 지출액 : 2조 8,391억 7천 7백만원
- 이월액 : 0원
- 불용액 : 465억 1천 2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6%(전년도 1.6%)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2천 5백만원, 낙찰차액 2억 6백만원, 집행잔액 454억 8천 1백만원임.

〈 2020회계연도 재무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2,885,689	2,839,177	-	46,512	1.6
사업예산계	2,100,199	2,098,115	-	2,084	0.1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918	1,744	-	174	9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309	1,924	-	385	16.7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54	28	-	26	48.1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2,643	1,809	-	834	31.6
시세입 목표달성	9,808	9,561	-	247	2.5
조세정의 실현	7,396	6,978	-	418	5.7
타 기관 지원	2,076,071	2,076,071	-	-	0
자치구 교부금 (재정보전금)	1,607,945	1,607,945	-	-	0
자치구 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468,126	468,126	-	-	0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	-	-	-	-
일반예산계	785,490	741,062	-	44,428	5.6
기본경비	2,211	1,879	-	332	15.2
인력운영비	783,271	739,175	-	44,096	5.6
재무활동	8	8	-	0	0

〈 2020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재무국	2,885,689,037	2,839,176,649	-	46,511,858	1.6%
재무과	786,946,739	742,351,125	-	44,595,614	5.7%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717,330	708,647	-	8,683	1.2%
2019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18,435	192,223	-	26,212	12.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3,518	43,518	-	0	0.0%
시간선택제임가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726,559	599,763	-	126,796	17.5%
계약심의회위원회 등 운영	20,736	18,100	-	2,636	12.7%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01,000	97,680	-	3,320	3.3%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91,042	84,669	-	6,373	7.0%
기본경비	1,756,808	1,431,356	-	325,452	18.5%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83,271,311	739,175,169	-	44,096,142	5.6%
자산관리과	2,354,379	1,969,979	-	384,400	16.3%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400,000	102,889	-	297,111	74.3%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817,962	1,732,475	-	85,487	4.7%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0,682	88,880	-	1,802	2.0%
기본경비	45,735	45,735	-	0	0.0%
계약심사과	122,495	96,408	-	26,087	21.3%
계약심사 업무추진	54,000	27,913	-	26,087	48.3%
기본경비	68,495	68,495	-	0	0.0%
세제과	1,610,718,504	1,609,876,010	-	841,963	0.1%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42,300	124,906	-	17,394	12.2%
마을세무사 운영	10,000	10,000	-	0	0.0%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1,709,604	1,674,754	-	34,320	2.0%
부동산 가격공시	781,000	-	-	781,000	100.0%
기본경비	122,182	112,933	-	9,248	7.6%
재정보전금	1,607,945,148	1,607,945,148	-	0	0.0%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국고보조금 반환	8,270	8,269	-	1	0.0%
세무과	478,074,897	477,828,859	-	246,038	0.1%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18,772	197,789	-	20,983	9.6%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31,560	692,068	-	139,492	16.8%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62,968	145,569	-	17,399	10.7%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4,200	191,097	-	3,103	1.6%
전자고지 미일리지 지원	689,822	689,822	-	0	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10,000	-	-	10,000	1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93,492	-	6,508	6.5%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000	5,000,000	-	0	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655,078	1,639,100	-	15,978	1.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45,106	912,530	-	32,576	3.4%
기본경비	141,631	141,631	-	0	0.0%
시세 징수교부금	468,125,760	468,125,760	-	0	0.0%
38세금징수과	7,472,023	7,054,267	-	417,756	5.6%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112,482	1,712,297	-	400,185	18.9%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차업무지원	5,004,960	5,004,960	-	0	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78,610	261,039	-	17,571	6.3%
기본경비	75,971	75,971	-	0	0.0%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성과상여금 본청 및 사업소 직원의 현원증가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이 부족하여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 성과상여금)에서 2억 5천만원을 전용하였음.

- 본청 및 사업소의 정원 및 현원 증가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액이 부족하여 「인력운영비(통합편성)」(보수 ⇒ 직급보조비)에서 3억 6천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2020년 4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무국 계약심사과에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사업비 3,587만원을 이체하였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재무국 현원 증가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지급액이 부족하여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효율화」(사무관리비 ⇒ 특정업무경비)에서 107천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세제과 현원 증가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지급액이 부족하여 「지방세심의 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 ⇒ 특정업무경비)에서 467천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20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시가격조사’ 1개 사업에 16억 7천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6억 7천만원을 집행함.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재무국 채권현재액(시유지 연부매각) 현황〉

관리부서	회계연도	건수	금액(원)	사유
합 계		202	678,156,460	시유지 연부매각 미수금채권
재무국 (자산관리과)	2005	200	616,519,720	
	2015	2	61,636,710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재무국 소관)

○ 2020년도말 재무국 관리 공유재산

- 토지 378천 m^2 6,988억원
- 건물 104천 m^2 136억원

총 7,124억원 상당의 금액

〈 2020회계연도 재무국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0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713,618	705	1,929	712,394
행정 재산	계	2,973	-	2,973
	공용재산	-	-	-
	공공용재산	380	-	380
	기업용재산	-	-	-
	보존재산	2,593	-	2,593
일반재산	710,645	705	1,929	709,421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참고)서울시 세입 결산 총괄 현황 〉

시세입 결산 : **49조 5,397억원**(예산현액 대비 105.9%)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㉑	징수결정액 ㉒	실제수납액 ㉓	불납 결손액㉔	미수납액 ㉕-㉖-㉗	비율	
						㉓/㉑	㉓/㉒
2020	46조 7,985	50조 7,669	49조 5,397	2,700	9,571	105.8%	97.6%
일반회계	32조 9,430	36조 9,168	35조 8,728	2,686	7,754	108.9%	97.2%
특별회계	13조 8,555	13조 8,501	13조 6,669	14	1,817	98.6%	98.7%
2019	40조 948	43조 259	41조 6,748	3,527	9,984	103.9%	96.9%
증감	6 조 7,037	7조 7,410	7조 8,649	△827	△413	1.9%P	0.7%P

○ 일반회계 : **35조 8,728억원 징수**(예산현액 32조 9,430억원의 108.9%)

- 지방세 : 23조 3,930억원(예산 19조 5,524억원 대비 119.6%)

- 세외수입 : 8,567억원(예산 1조 7,045억원 대비 50.3%)

- 지방교부세 : 1,816억원(예산 1,803억원 대비 100.7%)

- 보조금 : 8조 1,049억원(예산 8조 2,119억원 대비 98.7%)

- 보전수입 등: 3조 3,367억원(예산 3조 2,939억원 대비 101.3%)

○ 특별회계 : **13조 6,669억원 징수**(예산현액 13조 8,555억원의 98.6%)

- 공기업 : 2조 352억원(예산 2조 1,597억원 대비 94.2%)

- 기타 : 11조 6,316억원(예산 11조 6,958억원 대비 99.5%)

세출결산 : 44조 4,099억원(예산현액 대비 94.9%), 집행잔액 1조 2,240억원

가. 과다한 세수추계 오차

-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2조 3,480억원) 대비 17.0%(3조 7,922억원) 초과 수납된 26조 1,4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3조 1,249억원) 증가한 수준임.
- ※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 예산현액(21조 2,219억원) 대비 8.5%(1조 7,934억원) 초과 수납된 23조 153억원임.
- 반면, 징수결정액(27조 879억원) 대비 결산액(26조 1,402억원)은 3.5%(9,477억원) 부족 징수되어 결손처분액(2,666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6,811억원에 달하고 있음.
- ※ 2019회계연도 징수결정액(24조 1,335억원) 대비 결산액(21조 9,731억원)은 4.6%(1조 1,181억원) 부족 징수되어 결손처분액(3,486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687억원임.
- 이와 같은 과다한 규모의 세수추계의 오차와 미수납액 발생은 재무국의 고질적인 결산 형태로서, 매년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고액의 미수납액(체납액) 발생에 대한 재무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020회계연도 재무국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예산대비		2019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22,348,031	26,140,165	3,792,134	117.0%	23,015,348	3,124,817	113.6%
지방세 수입	19,552,425	23,393,017	3,840,592	119.6%	20,458,073	2,934,944	114.3%
세 외 수 입	228,657	180,233	-48,424	78.8%	197,343	-17,110	91.3%
보 조 금	1,704	1,670	-34	98.0%	1,789	-119	93.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65,245	2,565,245	0	100.0%	2,358,143	207,102	108.8%

나. 지방세수입 결산(23조 3,930억원)

- 2020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9조 5,524억원) 대비 19.6%(3조 8,406억원) 초과 수납된 23조 3,930억원으로 전년(20조 4,581억원) 대비 14.3%(2조 9,349억원) 증가한 수준임.

※ 2019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조 2,368억원(12.3%) 초과 징수

<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예산대비		19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과부족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율 (B/C)
계	195,524	233,930	38,406	119.6	204,581	29,349	114.3
취 득 세	46,330	74,707	28,377	161.2	55,908	18,799	133.6
지방소득세	54,331	61,077	6,746	112.4	58,059	3,018	105.2
재 산 세	29,990	32,040	2,050	106.8	28,411	3,629	112.8
지방소비세	20,414	19,428	-986	95.2	19,283	145	100.8
기 타 세 목	44,459	46,678	2,219	105.0	42,920	3,758	108.8

-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된 주요 지방세 세목은 취득세(2조 8,377억원, 61.2% 초과) 지방소득세(6,746억원, 12.4% 초과), 지방교육세(2,520억원, 16.4% 초과), 재산세(2,050억원, 6.8% 초과) 등이며, 부족 징수 세목은 레저세(△1,020억원, 81.7% 부족), 지방소비세(△986억원, 4.8% 부족), 지난년도 시세(△375억원, 16.9%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이 매년 10%를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고, 매년 경제성장률과 부동산가격, 주요 경기 동향 등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여 추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3조 8,406억원(19.6% 초과)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음.

< 최근5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B-A)	증가율 (B/A)
2020	19조5,524억원 (전년대비7.3%증)	19조5,524억원	23조3,930억원	3조8,406억원	19.6
2019	18조2,213억원 (전년대비6.6%증)	18조2,213억원	20조 4,581억원	2조2,368억원	12.3
2018	17조965억원 (전년대비9.9%증)	17조 965억원	19조1,033억원	2조 68억원	11.7
2017	15조5,554억원 (전년대비10.1%증)	15조5,554억원	17조8,171억원	2조2,617억원	14.5
2016	14조1,258억원 (전년대비2.5%증)	14조1,258억원	16조5,693억원	2조4,435억원	17.3

※ 2021년 지방세수입 예산편성액 : 20조 237억원 ('20년 예산 대비 4,713억원, 2.4% 증액 편성)

- 재무국의 보수적 세입예산편성 경향을 보면 매년 전년도 결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의도적으로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과다한 초과세입을 발생시키는 재무국의 행정 행태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것임.
- 이는 필요 사업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산운영의 비효율적 요소로써,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위배되어, 매년 과다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등 서울시 예산의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을 유발 하는 요인이 되는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재무국의 각성과 함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① 취득세

- 취득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4조 6,330억원) 대비 61.2%(2조 8,378억원) 초과 징수된 7조 4,707억원으로 전년(5조 5,908억원) 대비 33.6%(1조 8,799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지방세수입의 31.9%를 차지하여 금회 결산상 지방세 세입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세목으로, 예산대비 결산규모를 볼 때, 전년도에 이어 가장 큰 세입추계의 오차(2조 8,378억원, 61.2% 초과세입)를 보이고 있음.

< 취득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분	2020년		예산대비		2019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46,330	74,707	28,377	161.2	55,908	18,799	133.6
부동산	40,136	67,230	27,094	167.5	49,372	17,858	136.2
차량	6,194	7,477	1,283	120.7	6,536	941	114.4

<최근 3년간 취득세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0	46,330	46,330	74,707	28,377	161.2
2019	42,738	42,738	55,908	13,170	130.8
2018	43,946	43,946	51,917	7,971	118.1

<최근 5년 간 취득세 징수액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48,921	52,952	51,917	55,908	74,707
(증가율)	8.1	8.2	-2.0	7.7	33.6
부동산	42,698	47,756	45,395	49,372	67,230
(증가율)	8.3	11.8	-4.9	8.8	36.2
차량	6,223	5,196	6,523	6,536	7,477
(증가율)	6.2	-16.5	25.5	0.2	14.4

<서울시 자동차 등록 증감 현황>

(단위 : 대)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국산	외산	SUV등			
2020년(A)	3,157,361	1,428,203	561,659	722,122	106,504	329,943	8,930
2019년(B)	3,124,157	1,427,568	518,080	725,155	114,310	330,840	8,204
증감(A-B)	33,204	635	43,579	-3,033	-7,806	-897	726

※ 자료출처:서울통계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차종별)

- 먼저, 2020회계연도 취득세 예산안 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의 확대로 주택에 대하여는 거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매매가격의 경우는 최근2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하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추계한바 있으며,

<연도별 취득세(부동산) 예산 추계 적용지표>

연도	유형별 점유비	거래량 증감률	과표 신장율	징수율	비고
2017	직전년도	'12년 거래증감률*	최근3년 평균	최근3년 평균	*'17년 정책과 유사한 정책 적용 기간
2018	-	'01~'02년 평균거래량 대비 '03~'06년 평균 거래량 증감률*	※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로 거래 가격이 불확실하여 과표신장율 미반영 ¹⁾	최근5년 평균	*서울지역 투기지역 지정 전('01년~'02년)과 지정 후('03년~'06년) 기간의 거래량 증감률 적용
2019	최근3년 평균	'04~'08년 평균*	(주택)최근2년평균 (건물)최근3년평균 (토지)최근3년평균	최근5년 평균	*'18년 정책과 유사한 정책 적용 기간
2020	최근2년 평균	'08~'09년 평균*	최근2년평균	-	*'19년 시장상황과 유사한 기간

※ 2017.8.2. 정부에서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

- 결산상 과도한 취득세 초과세입의 원인에 대하여는 저금리로 인한 시중 자금이 풍부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에 따른 거래량 폭증과 지가상승, 부동산 공급 부족과 잦은 부동산 규제정책 변경에 따른 부동산 패닉 바잉 등의 사유로 세입이 폭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서울 부동산 거래량 현황]

항 목 \ 유 형	합 계	주 택	건 물	토 지
거 래 량	446천건	306천건	100천건	39천건
전년대비(증감율/건수)	21.4%↑(78천건↑)	24.9%↑(61천건↑)	11.1%↑(10천건↑)	22.6%↑(7천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계시스템(2020년말 기준)

[2017~2020년 서울아파트 평균매매 가격] (12월기준, 단위 천원, %)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전국 평균아파트 가격	396,410	351,787	325,014	313,552
서울 평균아파트 가격	893,100	827,228	717,749	659,905
전국전년대비(증감율)	12.7%	8.2%	3.7%	10.7%
서울전년대비(증감율)	8.0%	15.3	8.8	17.4

*출처 : 한국부동산원

〈2017~2020년 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부과 현황〉

(단위: 건, %, 억원)

가격구간	적용세율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건수	취득세	점유비									
6억 이하	1%	164,110	6,140	30	136,624	5,087	25	95,189	3,502	19	121,363	5,222	18
6억초과 ~ 9억이하	1~3%	31,276	4,876	23	30,512	4,790	23	24,179	3,788	21	44,162	6,838	23
9억초과~ 15억 이하	3%	14,820	5,333	26	15,522	5,687	28	14,601	5,319	29	24,074	8,800	30
15억초과		5,668	4,345	21	7,639	4,936	24	8,774	5,746	31	12,241	8,472	29
합계		215,874	20,694	100	190,297	20,500	100	142,743	18,355	100	201,840	29,332	100

* 점유비 : 연간 세액 합계 대비 가격구간별 세액 점유비 / 자료출처 : 세무종합시스템 주택 유상취득 신고자료

- 이는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한 거래감소 효과를 의식하여, 2020년도에도 유사한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 결국 과도한 초과세입을 유발한 주요 요인이라고 할 것인바,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입 추계를 위한 재무국의 성찰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②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5조 4,330억원) 대비 12.4%(6,746억원) 초과 수납된 6조 1,076억원으로 전년(5조 8,059억원) 대비 5.2%(3,017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금회 결산에서는 지방세 세입의 26.1%를 차지하여 취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지방소득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예산대비		2019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54,330	61,076	6,746	112.4	58,059	3,017	105.2
종합소득분	7,452	8,258	806	110.8	7,801	457	105.9
양도소득분	5,603	9,223	3,620	164.6	6,490	2,733	142.1
법인소득분	15,654	18,284	2,630	116.8	18,905	-621	96.7
특별징수분	25,621	25,311	-310	98.8	24,863	448	101.8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는 개인의 종합소득 및 양도 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된 소득에 과세되는 지방세로 2015년 이전까지 국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2015년 독립세 전환 이후 세입은 신장 추세에 있는 세목임.
- 지방소득세 세세목별 내역을 보면, 사업자등록 증가 등에 따른 종합소득분 (10.8%, 806억원) 초과세입과,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분의 경우에는 과다한 초과세입(64.6%, 3,62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 법인소득분의 경우 코로나 19 경제봉쇄, 미·중 무역분쟁, 수출 둔화 등을 이유로 전년대비 세입이 감소(3.3%, 621억원)하였음에도, 예산 대비 초과 (16.8%, 2,630억원)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 규모를 과소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징수분의 경우 세입 결손(0.2%, 310억원)이 발생하였는바, 각종 선행 지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입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지방소득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20	54,330	54,330	61,076	6,746	112.4
2019	52,385	52,385	58,058	5,673	110.8
2018	48,483	48,483	54,942	6,459	113.3
2017	42,297	42,297	46,395	4,098	109.7
2016	41,311	41,311	41,893	582	101.4

- ※ 사업자등록 : 2019년 6,735천명 → '20년 7,043천명) 4.6% ↑
- ※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상승률 : 2.3%↑('19년 340만원 → '20년 347만원)
- ※ 서울 중위 아파트가격 : ('19년) 82,975만원→ ('20년)87,272천원 5.2%↑
- ※ 상용근로자 수 : ('19년) 18,690천명 → ('20년) 18,356천명1.8%↓

- ※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 : ('19년) 370만원 → ('20년) 347만원 2.3% ↑
- ※ 수출 증가율: ('18년) 3.5% → ('19년) 1.5% → ('20년) -4.2% △5.7P ↓
- ※ 3분기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이익 : ('19년) 90조 → ('20년) 84조 △6.79% ↓

③ 재산세

- 재산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조 9,989억원) 대비 6.8%(2,050억원) 초과 수납된 3조 2,039억원으로 전년(2조 8,411억원) 대비 12.8%(3,628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지방세 세입의 13.7%를 차지하는 규모임.
- 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세입(1조 5,227억원)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재정보전금” 사업의 ‘자치구 기타 자원조정비*’(공동재산세전출금)의 재원임.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자원조정경비

< 재산세(서울특별시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분	2020년		예산대비		2019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29,989	32,039	2,050	106.8	28,411	3,628	112.8
특별시분	14,146	15,227	1,081	107.6	13,424	1,803	113.4
도시지역분	15,843	16,812	969	106.1	14,987	1,825	112.2

< 자치구 기타 자원조정비 교부 현황_결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교부액	1,577,165	1,300,009	1,165,213	1,077,375	982,902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어 매년 세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9년 공시가격 인상을 현황 >

(단위 : %)

연도	주택			건물	토지
	평균	단독	공동		
2020	10.83	6.92	14.73	2.82	8.25
2019	13.99	13.95	14.02	2.90	12.07
2018	8.76	7.32	10.19	2.99	6.84

※ 추계 적용비율 : 공동주택(7.16%), 단독주택(4.85%), 건물(1.55%), 토지(4.67%)

※ 본 재산세 세입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제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재원임.

-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인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임에도 매년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 주문에도 불구하고 결산률 격차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국의 각성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재산세 예산 대비 결산 추이 >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0	29,990	29,990	32,040	2,050	106.8
2019	26,151	26,151	28,411	2,260	108.6
2018	23,694	23,694	24,980	1,286	105.4
2017	21,664	21,664	22,883	1,219	105.6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구 분	재 산 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110조)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109조) • 주 택 : 시가표준액의 60% • 토 지 : 시가표준액의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동재산세 과세대상은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④ 자동차세

- 자동차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조 1,049억원) 대비 5.8%(637억원) 초과 수납된 1조 1,686억원으로 전년(9,401억원) 대비 24.3%(2,285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지방세 세입의 5.0%를 차지하는 규모임.

< 자동차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예산대비		2019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11,049	11,686	637	105.8	9,401	2,285	124.3
소 유 분	6,321	6,103	-218	96.6	6,022	81	101.3
주 행 분	4,728	5,583	855	118.1	3,379	2,204	165.2

-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되며, ‘소유분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의 세목이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가보조금 보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동차세 중 소유분의 경우 예년과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자동차 등록대수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예산현액(6,321억원) 대비 218억원(3.4%)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 결산액은 전년 대비 1.4%(82억원) 증가

< 서울시 자동차 등록 추이 >

(단위 : 대수)

구 분	2020년10월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등 록 대 수	3,153,735	3,124,157	3,124,651	3,116,256	3,083,007
(증 감 률)	100.9	100.0	100.3	101.1	101.2
자 동 차 세	6,103	6,022	5,940	5,924	5,752
(증 감 률)	101.3%	101.4%	100.3%	103.0%	103.6%

○ 주행분의 경우 2018년도에 유가보조금 보전분의 과다 교부액을 상계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율을 하향 교부해온 사항이 종료되어 예산 현액(5,583억원) 대비 33.6%(855억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음.

※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가보조금 보전분으로 구분하여 자동차세 보전분은 전국 자동차세 보전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교부.

【유가보조금 보전분 안분율 조정 현황】

(단위 : %)

구 분	'20년			'19년		
	1월	3~9월	11~12월	1~3월	4~10월	11~12월
안분율	6.16	17.38	13.44	18.38	2.58	6.16

○ 한편, 자동차세(소유분) 선납(연납)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세액감면(10%) 규모가 287억원에 달하여 세입 결손 규모(218억원)를 초과하고 있는바, 선납에 따른 실익과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규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선납에 따른 감면율의 축소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자동차세 연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연납전세액(A)	연납세액(B)	감면추계액(A-B)
2019	1,175,352	285,269	256,742	28,527
2020	1,210,689	287,992	259,264	28,728
증가율	100.5	103.3	103.3	103.3

※연(年)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 세액공제(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⑤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조 414억원) 대비 4.8%(986억원) 부족 징수된 1조 9,428억원으로 전년(1조 9,282억원) 대비 0.8%(146억원) 증가한 수준임.

< 지방소비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분	2020년		예산대비		2019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20,414	19,428	-986	95.2	19,282	146	100.8
소비지출분 (15%)	11,986	11,453	-533	95.6	10,709	744	106.9
취득세보전분 (6%)	8,428	7,975	-453	94.6	8,573	-598	93.0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 방안*에 따라 소비지출분(15%)과 취득세 보전분(6%)으로 하여 총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1단계: 2019년 지방소비세(소비지출분) 4%p 인상에 따라 세목 총 세율은 15%
2단계: 2020년 지방소비세(소비지출분) 6%p 추가 인상하여 세목 총 세율은 2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					
(국세) 부가가치세 79%				(지방세) 지방소비세 21%	
구분	안분방식				
6%p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교육 전출금 공제
	취득세 감소비율(98%) + 사회복지수요(2%)	취득세 감소비율	보통교부세 배분비율(19.24%) 시·도 몫 시·군·구 몫		
5%p	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 【시·도】 지방소비세				
10%p	① 전환사업 보전분(3.6조/정액)		② 재정조정분(0.9조/정액)		③ 잔여분
	시·도 (약2.8조)	시·군·구 (약0.8조)	조정교부금 (약0.8조)	교육전출금 (약0.1조)	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

○ 다만,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방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해당 전환사업비(4.5조원) 충당을 위해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 인상분(2019~2020년, 10%) 중에서 4.5조원을 전환사업비로 보전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2020년의 국제 부가가치세 예산이 87.2조임을 감안하면 명목 세율 21% 대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규모는 4.5조를 제외한 13.8조원으로 실질세율은 15.8% 수준임.

○ 이에 따라 2020년도 세율이 전년에 비해 6% 인상(최종 2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8%(146억원) 세입이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 2019년 세입(1조 9,282억원)을 기준으로 세율 6% 인상을 가정해 볼 경우 추가세입금 규모는 1,157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 반면, 현재 서울시에서는 긴급 수요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과,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의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전환사업비를 2022년까지 보전하기로 한 계획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⑥ 레저세

○ 레저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248억원) 대비 81.6%(1,019억원) 부족 징수된 229억원으로 전년(1,282억원) 대비 82.1%(1,053억원) 감소한 수준임.

< 레저세 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대비		2019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124,873	22,924	-101,949	18.4	128,189	-105,265	-82.1
경 마	83,221	12,789	-70,432	15.4	87,199	-74,410	-85.3
경 료	31,776	8,141	-23,635	25.6	30,536	-22,395	-73.3
경 정	9,876	1,994	-7,882	20.2	10,454	-8,460	-81

- 레저세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부터 경매중단과 무고객 경매의 반복으로 한국마사회의 매출은 1조 1천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6조원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레저세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0	1,249	1,249	229	-1,020	18.2
2019	1,310	1,310	1,282	-28	97.9
2018	1,321	1,321	1,352	31	102.3

※ '18년 1월 용산구 장외발매소 폐업 이후 세입 감소 추세

- ('17년) 1,409억원 → ('18년) 1,352억원 → ('19년) 1,310억원 → ('20년) 229억원

※ 한국마사회도 입장객 감소, 매출정체 등으로 '19년 예산 감축 편성

- 매출예산: ('18년) 7조 8,122억원 → ('19년) 7조 6,609억원 Δ 1,513억원(Δ 1.9%) ↓ 감소

<최근 3년간 레저세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0	1,249	1,249	229	-1,020	18.2
2019	1,310	1,310	1,282	-28	97.9
2018	1,321	1,321	1,352	31	102.3

- 다만, 레저세 세입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81.6%(1,019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는바,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지방재정법」 상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사전에 감액 추경의 여지는 없었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세입결손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교육재정보전금 환수, 세출사업의 조정 등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경주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2021.5.21.)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제도변경에 따른 레저세 세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⑦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221억원) 대비 16.9%(375억원) 부족 징수된 1,846억원으로 전년(2,263억원) 대비 18.4%(417억원) 감소한 수준이며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지난연도 시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예산대비		2019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지난연도시세	2,221	1,846	-375	83.1	2,263	-417	81.6

<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20	2,221	2,221	1,846	-375	83.1
2019	2,216	2,216	2,263	47	102.1
2018	2,366	2,366	2,003	-363	84.7
2017	2,333	2,333	2,094	-239	89.8
2016	2,253	2,253	2,374	-363	98.5

※ 2020년 징수 결정액(8,343억원) 대비 징수율은 22.1%임.

- 재무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징수활동이 제한되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동일 여건에도 금년 4월말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166억원 늘어난 1,267억원을 징수한 실적으로 볼 때, 2020년도 세입 결손액이 375억원에 달하고 있는바 체납세액 징수에 안일한 대응을 해 온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세입징수 포상금(2020년 예산 2,189백만원)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금액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매년 지난연도 시세 징수액의 80%를 넘게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자치구별 포상금 지급 방법에 건수를 반영하는 등 징수 노력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는 지급 및 배분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 징수 대비 징수포상금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액 (B)	예산현액 대비		징수포상금(백만원)		
			증감액 (B-A)	증감률	계	시	자치구
2020	222,078	184,628	-37,450	-16.9	1,708	455	1,253
2019	221,567	226,319	4,752	2.1	2,049	487	1,562
2018	236,597	200,326	-36,271	-15.3	1,977	399	1,578
2017	233,297	209,404	-23,893	-10.2	2,058	412	1,646
2016	225,248	237,357	12,109	5.4	2,326	394	1,932

○ 시세 지난년도수입의 세세목별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8,343억원) 대비 징수율은 22.1%(1,846억원)에 그치고 있고,

- 이 중 지난년도 지방소득세는 총 징수결정액의 64.9%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징수결정액(5,415억원) 대비 10.1%(548억원)의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체납 징수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국세에 앞서서는 조세채권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재무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취득세(징수결정 552억원)는 총 징수결정액의 6.6%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지방소득세에 비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에 유리한 세목임에도 징수결정액(552억원) 대비 13.2%(73억원)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소득세에 이어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바, 부과 당시부터 납세담보 제공 요구 등 채권확보를 통한 징수실적 제고 노력이 요구되는 세목이라고 하겠음.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세목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특별시분)	재산세(도사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액	8,344	552	158	5,415	1,069	1	300	324	64	461
(점유율)	100	6.6	1.9	64.9	12.8	0.0	3.6	3.9	0.8	5.5
수납액	1,846	73	57	548	625	0	124	152	22	245
결손액	2,453	201	23	2,088	65	0	18	15	3	40
미수납액	4,044	277	79	2,778	380	1	158	156	39	176
징수율	22.1	13.2	36.1	10.1	58.5	0.0	41.3	46.9	34.4	53.1
결손율	29.4	36.4	14.6	38.6	6.1	0.0	6.0	4.6	4.7	8.7
미수납율	48.5	50.2	50.0	51.3	35.5	100.0	52.7	48.1	60.9	38.2

- 최근 5년간 지난년도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추이를 보면, 2016년 16.8%에 이어 2020회계연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징수액(수납액) 추이를 보면 2019회계연도를 제외하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 5년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세목별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시세소계	예산	222,078	221,567	236,597	233,297	225,248
	징수결정액	834,347	1,030,407	1,256,009	1,328,201	1,416,742
	수납액	184,629	226,319	200,327	209,405	237,356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결손액	245,339	314,213	383,785	257,982	234,811
	다음연도이월액	404,379	489,875	671,898	860,814	944,575
	징수율	22.13	21.96	15.95	15.77	16.75
취득세	징수결정액	55,176	75,234	81,385	92,159	105,303
	수납액	7,330	22,141	7,808	13,791	16,713
	결손액	20,149	17,927	25,433	20,688	19,411
	다음연도이월액	27,697	35,165	48,143	57,680	69,179
	징수율	13.28	29.43	9.59	14.96	15.87
주민세	징수결정액	15,834	16,782	17,320	16,915	18,188
	수납액	5,682	5,965	6,001	6,123	6,379
	결손액	2,244	3,228	2,788	2,394	3,568
	다음연도이월액	7,907	7,589	8,532	8,399	8,241
	징수율	35.88	35.54	34.65	36.20	35.07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액	541,450	674,864	839,199	893,623	939,332
	수납액	54,796	58,684	59,038	50,297	54,887
	결손액	208,848	260,371	282,820	194,052	176,423
	다음연도이월액	277,806	355,809	497,341	649,274	708,021
	징수율	10.12	8.70	7.04	5.63	5.84
자동차세	징수결정액	106,929	121,305	122,847	132,521	147,504
	수납액	62,443	69,934	67,061	72,767	79,482
	결손액	6,478	12,471	9,097	9,045	15,323
	다음연도이월액	38,008	38,900	46,689	50,709	52,700
	징수율	58.40	57.65	54.59	54.91	53.88
담배소비세	징수결정액	1	1	12,848	11,532	10,417
	수납액	0	0	0	0	0
	결손액	0	0	12,847	11,531	0
	다음연도이월액	1	1	1	0	10,417
	징수율	0.00	0.00	0.00	0.00	0.00
재산세 (특별시분)	징수결정액	30,032	40,567	60,091	58,425	62,082
	수납액	12,442	17,584	14,118	15,442	20,630
	결손액	1,760	7,626	22,543	5,462	5,834
	다음연도이월액	15,830	15,357	23,429	37,521	35,618
	징수율	41.43	43.35	23.49	26.43	33.23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결정액	32,381	38,643	48,255	48,374	52,603
	수납액	15,241	19,044	17,182	18,279	22,533
	결손액	1,524	4,617	11,278	4,240	4,573
	다음연도이월액	15,617	14,982	19,796	25,855	25,498
	징수율	47.07	49.28	35.61	37.79	42.84
지역자원 시설세	징수결정액	6,427	7,956	8,357	9,637	10,975
	수납액	2,213	3,173	2,845	3,609	4,214
	결손액	343	893	908	1,130	1,536
	다음연도이월액	3,871	3,890	4,605	4,897	5,225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징수율	34.43	39.88	34.04	37.45	38.40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액	46,116	55,056	65,707	65,015	70,338
	수납액	24,482	29,795	26,274	29,097	32,519
	결손액	3,993	7,079	16,071	9,440	8,143
	다음연도이월액	17,642	18,182	23,362	26,479	29,676
	징수율	53.09	54.12	39.99	44.75	46.23

※ 폐지되거나 변경된 세목은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기준 세목으로 작성되었음.

- 이는 결손처분액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이 감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진 착시현상으로, 결손처분액은 2018년 3,838억원, 2019년 3,142억원에 이르러, 2020년 징수액(1,846억원)이 최저 수준(최근 5년)에 그쳤음에도 징수율(22.1%)은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임.
- 비록 매년 자치구에서 이관되어 오는 체납액의 누증으로 우선 징수 가능한 체납세액 징수에 집중하기 위하여 무재산 등으로 파악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여 별도의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은닉재산 등을 찾아내어 징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나,
-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결손처분을 확대한 것은 아닌지, 결손처분의 대상과 방법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결손처분 추이: 2016년 2,348억원(결손률 16.6%), 2017년 2,580억원(19.4%), 2018년 3,838억원(30.6%), 2019년 3,142억원(22.3%), 2020년 2,453억원(29.4%)

<최근 5년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징수 현황>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	222,078	221,567	236,597	233,297	225,248
징수결정액	834,347	1,030,407	1,256,009	1,328,201	1,416,742
수납액	184,629	226,319	200,327	209,405	237,356
결손처분액	245,339	314,213	383,785	257,982	234,811
다음연도이월액	404,379	489,875	671,898	860,814	944,575
징수율	22.13	21.96	15.95	15.77	16.75

- 또한, 불납결손 처분 후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된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결손처분액 1조 4,361억원에 대하여 29.4%(4,215억원)를 결손을 취소하고, 취소금액의 32.4%(1,367억원)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불납결손 취소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결손처분액 A		1,436,130	245,339	314,213	383,785	257,982	234,811	
시+구	결손취소액 B	421,543	83,880	86,222	113,797	63,421	74,223	
	취소율 (B/A)	29.4	30.3	20.2	29.7	33.4	35.7	
	징수액 C	136,673	23,788	33,508	27,580	23,681	28,116	
	징수율	결손처분액 대비 (C/A)	9.5	9.7	10.7	7.2	9.2	12.0
		결손취소액 대비 (C/B)	32.4	28.4	38.9	24.2	37.3	37.9
시	결손취소액	266,613	59,826	53,376	84,751	27,630	41,030	
	징수액	54,194	9,804	16,972	12,082	5,795	9,541	
구	결손취소액	154,930	24,054	32,846	29,046	35,791	33,193	
	징수액	82,479	13,984	16,536	15,498	17,886	18,575	

- 불납결손이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 불명, 실익 없는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지방세 중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수절차를 일시중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최근 5년간 불납결손처분(1조 4,361억원) 후 이를 다시 징수한 금액은 1,367억원(9.5%, 연평균 273억원) 수준이나, 결손처분 후 결손취소 실적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결손처분한 세수가 사장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 불납결손처분의 적정성과 담당 세무공무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가칭 결손처분위원회) 마련 등 불납결손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재무국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세외수입 결산

-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287억원) 대비 21.2%(484억원) 부족 징수된 1,802억원으로 전년 결산액(1,973억원) 대비 8.7%(171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484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음.

<2020회계연도 재무국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예산대비		2019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세 외 수 입	228,657	180,233	-48,424	78.8%	197,343	-17,110	91.3%

- ※ 예산현액(2,287억원) 규모는 전년(6,407억원) 대비 64.3%(4,120억원) 감소한 수준임.
- ※ 징수결정액(2,002억원) 대비 징수율은 90.0%(1,802억원)로 결손처분액(3.4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97억원 수준임.

1) 과다한 세입결손 발생

- 재무국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세입 과목은 ‘공유재산매각수입(52.0%), 공공예금이자수입(57.7%), 공유재산임대료(59.0%), 기타사용료(63.1%), 지난연도수입(75.2%)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세외수입 예산 대비 수납률 80% 미만 과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C/B)
세외수입	228,657	200,227	180,233	339	19,655	78.8%	90.0%
경상적세외수입	56,917	35,314	35,192	0	122	61.8%	99.7%
재산임대수입	14,028	8,292	8,271	0	22	59.0%	99.7%
공유재산임대료	14,028	8,292	8,271	0	22	59.0%	99.7%
기타사용료	2,301	1,548	1,451	0	97	63.1%	93.7%
이자수입	39,864	24,686	24,683	0	3	61.9%	100.0%

	공공예금이자수입	35,404	20,428	20,428	0	0	57.7%	100.0%
	임시적세외수입	171,740	164,913	145,041	339	19,533	84.5%	88.0%
	재산매각수입	57,957	38,010	30,110	0	7,900	52.0%	79.2%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7,957	38,010	30,110	0	7,900	52.0%	79.2%
	지난연도수입	7,066	16,827	5,312	339	11,176	75.2%	31.6%

- 공유재산매각수입 부족 징수(48.0%, 278억원) 사유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울 추모공원 부지(서초구 원지동) 이전 추진의 중단(2019.9.8.)으로 매각부지에 대한 2020년도 분납금(144억원) 미수납 등에 따른 것으로,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세입의 결손과 분납금 반환 과정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공예금이자수입의 부족 징수(42.3%, 150억원) 사유는 정기예금 기준금리(COPIX)의 하락에 따른 정기예금 금리수준 인하와 정기예금 예치액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 면밀한 금리의 변경 추이 분석과 여유 자금 운영 계획을 통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COPIX금리: 1.85%(편성시)→0.9%(20.12.)
 - ※ 예치율: 90%(전망치)→34.9%(연평잔기준)
- 공유재산임대료 부족 징수(41.0%, 58억원) 사유는 재무국 공유재산임대료 주요 세입원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용하는 4개의 면허시험장에 대한 임대료(약 75%)로 그 일부에 대하여 2019년 귀속분을 2020년도에 징수한데 이어, 2020년도분 또한 2021년에 지연 징수(2021.2. 납부)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연도별 적기 징수를 통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준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기타사용료 부족 징수(36.9%, 8억원) 사유는 송파구 풍납동 성벽 복원 및 정비사업으로 ‘삼포산업’ 사용 부지의 사용계약의 종료(‘20.6.30.)에 따른 것으로 이후 점유기간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또는 변상금 처분 예정이며, 송파구에서 토지인도소송(‘20.8., 2020가합577131,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진행하고 있는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의 부족 징수(24.8%, 18억원) 사유는 소송 등에 따른 징수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지난연도수입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B-C)	징수율 (B/A)
세외수입	228,657	200,227	180,233	339	19,655	90.0%
임시적세외수입	171,740	164,913	145,041	339	19,533	88.0%
지난연도수입	7,066	16,827	5,312	339	11,176	31.6%

- 부과 후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확행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분 등을 통한 지난연도수입 세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재무국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결산 추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지난연도수입 (세외수입)	16,827	5,312	31.6	0	0	11.1	0	0	39.0

- 재무국의 세외수입은 결손 발생액이 484억원(예산현액의 21.2%)에 달하고 있는바, 세입의 결손은 시급성을 요하는 시민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예산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저해하는바, 재무국은 세입예산 편성 주요 지표 및 변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등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세입예산 미편성

- 한편,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무국 부서별 세외수입 발생 형태를 보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이 발생(433천원)하고 있는바,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과부족 사유
그외수입	-	940	940	
계약심사과	-	940	940	직원 봉급 반납 징수
38세금징수과	-	31,056	21,180	소송비용청구액(11백만원) 등
지난연도수입		432,512	2,032	
재무과	-	378,450	2,032	납부불복(소송 진행중)
세제과	-	28,370	-	지방세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미회수금
38세금징수과	-	25,692	-	지난연도 소송비용 및 체납처분비

라. 잉여금의 증가

- 재무국의 2020회계연도 잉여금은 2조 3,0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6%(1,652억원) 증가한 수준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마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불납	시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65,245	2,565,245	2,565,245	-	-	-	100.0%
잉여금	2,304,433	2,304,433	2,304,433				100.0%
순세계잉여금	835,027	835,027	835,027	-	-	-	100.0%
법정잉여금	1,469,407	1,469,407	1,469,407	-	-	-	100.0%

- 주요 발생사유는 초과세입 1조 8,407억원, 세출 집행잔액 4,638억원이며, 초과세외수입은 2019년(1조 6176억원) 대비 13.8%(2231억원) 증가하였고, 세출 집행잔액은 2019년(5,243억원) 대비 11.6%(606억원)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잉여금 = (A) + (B)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금액	증가율		
'20년 편성	2,304,433	7.6	1,840,672	463,761
'19년 편성	2,141,910	△11.9	1,617,576	524,333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03,001
'17년 편성	2,058,790	21.9	1,720,219	338,571
'16년 편성	1,688,784	-	1,268,884	419,901

- 과도한 잉여금의 방지를 위해서는 세입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와 함께 세출예산의 경우는 실소요예산의 편성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마. 재무국 세입예산 종합 분석

- 종합적으로, 세입결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예산과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 특히, ‘취득세(61.3%, 2조 8378억원 초과)’과 같이 과다한 초과세입의 발생과 ‘레저세(81.6%, 1,019억원 부족), 지방소비세(4.8%, 986억원 부족), 지난해도 시세(16.9%, 374억원 부족), 공유재산매각수입(48.0%, 278억원 부족) 등과 같은 세입결손의 발생은,
 -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침해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및 필요 사업의 지연과 별도의 예산조정 등을 수반하게 되어 행정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바,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재무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 2020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예산현액(2조 8,856억 8천 9백만원) 대비 98.4%(2조 8391억 7천 7백만원)를 집행하여, 불용률은 1.6%(465억 1천 2백만원)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임.
- 다만, 타 기관 지원액(2조 761억원, 재정보전금, 시세징수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사업 예산현액(8,096억원) 대비 불용률은 5.7%로 서울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률 1.6%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2020회계연도 재무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2,885,689	2,839,177	-	46,512	1.6
사업예산계	2,100,199	2,098,115	-	2,084	0.1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918	1,744	-	174	9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309	1,924	-	385	16.7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54	28	-	26	48.1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2,643	1,809	-	834	31.6
시세입 목표달성	9,808	9,561	-	247	2.5
조세정의 실현	7,396	6,978	-	418	5.7
타 기관 지원	2,076,071	2,076,071	-	-	0
자치구 교부금 (재정보전금)	1,607,945	1,607,945	-	-	0
자치구 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468,126	468,126	-	-	0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	-	-	-	-
일반예산계	785,490	741,062	-	44,428	5.6
기본경비	2,211	1,879	-	332	15.2
인력운영비	783,271	739,175	-	44,096	5.6
재무활동	8	8	-	0	0

가. 예산의 전용·변경사용

1) 예산의 전용

○ 재무국의 2020회계연도 예산의 전용(통계목간)은 2건에 6억 1천 2백만원임.

<2020 회계연도(일반회계) 전용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번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예산현액	집행잔액	승인일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보수 (101-01)	535,269	△251		534,658	25,754 (4.8%)	20-03-23 (재무과)
		성과상여금 (303-02)	21,811		251	22,063	100 (0.5%)	
2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보수 (101-01)	535,018	△360		534,658	25,303 (4.7%)	20-11-19 (재무과)
		직급보조비 (204-02)	19,367		360	19,728	199 (1.0%)	

- 2020년 3월 예산전용 건은 2억 5천 1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내 ‘보수’를 ‘성과상여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직원 현원 증가에 따라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전용 사용하였음.
- 같은 해 11월 예산전용 건은 3억 6천 1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내 ‘보수’를 ‘직급보조비’로 전용한 것으로, 지급대상 현원 증가에 따라 예산편성 후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액이 인상(‘19.1.8 공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현원 증가(173명)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전용 사용하였음.
 - ※ 예산편성 당시(‘19.10.) 정·현원을 고려하여 8,445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급대상자가 8,569명으로 124명 증가하였음.
- “인력운영비” 중 ‘보수’ 예산은 시 직원의 급여 등 지급을 위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5,131억원)으로, 예산 전용(총 2건, 3.23, 11.19)을 통하여 6억 2천 2백만원을 감액하고도 253억 3백만원(4.7%)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성과상여금’은 2억 5천 1백만원을 증액하여 전용(‘20.3.23)하고도

1억원(0.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전용에 필요한 예산은 1억 5천만원 수준이었으며,

- ‘직급보조비’는 3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전용(‘20.11.19)하고도 1억 9천 9백만원(1.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1억 6천만원만 전용에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인력운영비 결산 내역(2020년) >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총 계	783,271	739,175	44,095	94.4%
보수(일반직)	534,658	509,355	25,303	95.3%
기타직 보수(임기제)	105,069	102,445	2,624	97.5%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752	85,883	15,869	84.4%
직급보조비	19,728	19,529	199	99.0%
성과상여금	22,063	21,963	100	99.5%

2) 예산의 변경사용

○ 재무국의 2020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에 57만원으로,

- 재무국(재무과, 세제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과 “지방세심의 위원회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를 ‘특정업무경비’로 각각 예산 변경사용 (574천원, ‘20.11.27., ‘20.12.01.)하고도, 해당 사무관리비의 11.0%(2,0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020 회계연도(일반회계) 변경사용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연 번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예산현액	집행잔액	승인일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무관리비 (201-01)	90,300	△107		90,193	2,682 (3.0%)	20-11-27 (재무과)
		특정업무경비 (204-03)	69,000		107	69,107	0	
2	지방세심의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92,500	△467		92,033	17,362 (18.9%)	20-12-01 (세제과)
		특정업무경비 (204-03)	34,800		467	35,267	0	

○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써, 재무국의 “인력운영비”의 ‘보수’의 경우에 대한 두번에 걸친 감액 변경사용에도 불구하고, 25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예산을 증액 전용한 ‘성과 상여금’과 ‘직급보조비’의 경우는 3억원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사항임.

○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산의 전용·변경사용에 있어 전형적인 자의적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일 뿐 아니라, 보다 긴급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예산 운영 행태인바,

- 향후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예산 전용·변경사용을 통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인력운영비(보수) 관련 예산 전용·변경사용 현황>

○ 2018 회계연도(일반회계) : 전용 1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1건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05,755,294	270,125		2018-11-29	505,485,169	477,302,292	28,182,877 (5.6)
	204-02 직급보조비	17,571,625		270,125		17,841,750	17,830,159	11,591 (0.1)
○ 2019 회계연도(일반회계) : 전용 3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3건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9,809,990	391,878		2019-03-22	519,418,112		
	303-02 성과상여금	20,614,106		391,878		21,005,984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9,418,112	116,000		2019-03-28	519,302,112		
	303-02 성과상여금	21,005,984		116,000		21,121,984	21,095,987	25,997 (0.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9,302,112	1,370,860		2019-11-25	517,931,252	488,925,367	24,252,424 (4.6)
	204-02 직급보조비	17,990,870		1,370,860		19,361,730	19,328,999	32,731 (0.1)

○ 2020 회계연도(일반회계) : 전용 2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2건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35,269,902	251,084		2020-03-23	534,658,233	509,354,714	25,303,518 (4.7)
	303-02 성과상여금	21,811,852		251,084		22,062,936	21,962,851	100,084 (0.5)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35,018,818	360,585		2020-11-19	534,658,233	509,354,714	25,303,518
	204-02 직급보조비	19,367,767		360,585		19,728,352	19,528,961	199,390 (1.0)

○ 2019 회계연도(일반회계) : 변경1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총 2건								
인력운영비	보수	517,931,252	4,755,206		2019-12-16	513,176,046	488,925,367	24,252,424 (4.6)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91,455,498		4,755,206		96,210,704	95,476,749	733,955 (0.7)

나. 20% 이상 불용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 재무국 세출예산 결산액 결과 465억 1천 2백만원 (예산현액 2조 8,856억 8천 9백만원 대비 1.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재무국	2,885,689	2,839,177	46,512	1.6%
재무과	786,947	742,351	44,596	5.7%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727	600	127	17.5%
기본경비	1,757	1,431	325	18.5%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83,271	739,175	44,096	5.6%
자산관리과	2,354	1,970	384	16.3%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400	103	297	74.3%
계약심사과	122	96	26	21.3%
계약심사 업무추진	54	28	26	48.3%
세제과	1,610,719	1,609,876	842	0.1%
부동산 가격공시	781	0	781	100.0%
세무과	478,075	477,829	246	0.1%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32	692	139	16.8%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10	0	10	100.0%
38세금징수과	7,472	7,054	418	5.6%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112	1,712	400	18.9%

<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사업(통계목별)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	불용		불용사유
				금액	비율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	15	5	23.6	○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행저조
2019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	11	10	46.5	
2019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기타보상금	10	7	3	32.6	○ 결산감사위원 여비 증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연금지급금	727	600	127	17.5	○ 시간제공무원 퇴직인원수 감소
기본경비	국내여비	167	92	75	44.8	○ 코로나19 출장 자제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406	1,159	247	17.6	○ 인사이동 등 현원차이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534,658	509,355	25,304	4.7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	불용		불용사유
				금액	비율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기타직보수	105,069	102,445	2,624	2.5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752	85,883	15,869	15.6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시설비	400	103	297	74.3	○ 재산교환 집행 잔액 등
계약심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9	13	26	66.9	○ 행사 취소, 원가자문위원회 감소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	국내여비	1	0	1	73.6	○ 자치구지도점검 횟수 감소
부동산가격 공시	사무관리비	781	0	781	100.0	○ 계속된 유찰로 업체 선정 곤란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공공운영비	35	21	14	39.6	○ 대체 매체 증가로 문자 발송 절감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무관리비	832	692	139	16.8	○ 낙찰차액 발생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사무관리비	10	0	10	100.0	○ 연찬회 미 실시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기타보상금	30	0	30	100.0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대상자 저조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포상금	2,079	1,709	370	17.8	○ 코로나19 징수실적 감소
고액체납 시세 징수강화	공공운영비	77	60	17	21.7	○ 고지서 발송건수 감소 등

○ 재무국의 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440억 9천 6백만원을 포함한 7개 사업으로, 461억 6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체 불용액(465억 1천 2백만원)의 99.3%를 차지하고 있는바, 재무국은 효율적 예산운형을 위하여 과도한 불용 발생 사업을 구조조정 하는 등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과다 불용

○ “인력운영비(통합편성)”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직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비한 예산으로, 7,833억원의 예산현액 중 441억원 (5.6%)을 불용처리 하였음.

※ 인력운영비 불용액 440억 9천 6백만원 중 57.4%(253억 3백만원) 통계목 ‘보수’에서, 36.0%(26억 2천 4백만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목 그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최근 3년간 인력운영비 불용 현황 > (단위 : 억원)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2020			2019			2018		
	예산액	불용액	비율	예산액	불용액	비율	예산액	불용액	비율
합 계	7,833	441	5.6	7,349	347	4.7	7,107	439	6.2
보수	5,347	253	4.7	5,132	243	4.7	5,058	282	5.6
기타직보수	1,051	26	2.5	962	7	0.8	932	38	4.1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18	159	15.6	851	96	11.3	692	73	10.6
직급보조비	197	2	1.0	194	0	0.2	176	0	0.1
성과상여금	221	1	0.5	211	0	0.1	249	46	18.3

- 재무국의 ‘인력운영비’는 편성 당시의 현원과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인사이동, 휴직·복직·퇴직 등으로 인한 근무자 수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잔액(5.6%)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337억원, 2017년 333억원, 2018년 439억원, 2019년 347억원, 2020년 441억원의 막대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 이는 주먹구구식 인력 수급 계획과 면밀한 산출기초 없는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인력 수급 계획, 급여 체계 변경 계획 등 관련 정책을 미리 살펴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 발생

- 재무국의 2020회계연도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조정에도 불구하고, 6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14억 9,982만원이 발생하였음.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불용> (단위 : 백만원, %)

연도	통계목	당초 예산액	추가경정 예산액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율	집행잔액발생 사유
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자산및물품취득비)	817	-280	537	1	0.2	(재무과)
2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시설비)	33,218	-32,818	400	297	74.3	(자산관리과) 사유재산의 긴급 보수·보강 요청 감소 및 재산교환 집행 잔액
3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공공운영비)	1,214	-61	1,153	17	1.4	(자산관리과)
4	부동산가격공시(사무관리비)	-	781	781	781	100.0	(세제과) 계속된 유찰로 업체 선정 곤란 및 시의회 사업중단 권고
5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위한 연찬회(사무관리비)	30	-20	10	-	100.0	(세무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연찬회 미실시
6	시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포상금)	2,188,882	-110	2,112	404	19.1	(38세금징수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 실적 감소되어 포상금집행 저조

- 2020년도는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고자 유례가 없는 4회에 걸친 추경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미집행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였다고 할 것임.

1) 부동산가격 공시 사업

- 재무국(세제과)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수준 및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및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행정부시장 방침 제50호. 2020.3.11.)하고, 2020년 6월 제3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7억 8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바 있음.

<부동산 가격공시 사업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본예산	추경예산	지출액	집행잔액
재무국	부동산 가격 공시	201-01 사무관리비	0	781,000	0	781,000

- 다만, 추가경정예산 당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은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이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있는바,

<공시가격 결정 기관 등>

구분	토 지		공동주택 (전체)	단독주택	
	표준지	개별지		표준주택	개별주택
결정기관	국토부	자치구	국토부	국토부	자치구
공시대상	29,152필지	880,858필지	2,478,646호	22,228호	305,218호
공 시 일	2.13	5.29	4.29	1.23	4.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공시에 관한법률」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서울시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법적 제한은 없는지, 표본조사의 결과가 공시가격에 구속력을 얻지 못하여 사업예산이 사장될 우려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제295회 정례회)이 있었음.

- 이후 유찰로 인한 용역 추진이 무산되고, 수의계약마저 유찰되어 2020년 12월 사업 중단 보고 방침과 함께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음.
- 결과적으로 본 사업이 코로나19 대응 등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긴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반함은 물론,
- 보다 긴급히 서울시민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할 것 인바, 이에 대한 재무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세무공무원 직무역량위한 연찬회

- 재무국(세무과)은 2020년 6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연찬회, 토론회, 워크숍 등 관련 예산을 감액 조정한 바 있으며, 본 사업 연찬회의 경우는 당초예산(3천만원) 대비 66.7%(2천만원)를 감액 편성하여, 1천만원으로 예산 조정 후 결국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
- 본 사업은 대면 행사성 사업으로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적용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일부 예산만을 감액편성하고 결국 전액 불용 처리한 예산 운영 행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마.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전액 불용)

- 재무국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6개과에서 25개 사업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37억 3,592만원 대비 28.9%(10억 8,073만원)를 불용처리 하였음.
-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 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예산 낭비의 대표적 요인으로서 예산편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예산과목의 하나라고 할 것임.
- 한편,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전액을 불용처리한 경우는 6건, 8억 9백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산현액 전액 불용(산출기초) 내역 > (단위 : 천원, %)

부서	세부사업명	산출기초	예산현액	불용률	사유
재무과	기본경비	행정장비수리비	2,016	100.0	
계약심사과	계약심사업무추진	계약심사담당공동연수개최	10,000	100.0	미개최
계약심사과	기본경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813	100.0	전년도 종이류 과다 구매
세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원격 화상심리장비 대여비	5,500	100.0	코로나19 공개세무법정 미실시
세제과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공시가격 표본조사비	781,000	100.0	용역 업체 유찰로 사업중단
세무과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세무공무원 직무 연찬회	10,000	100.0	코로나로 인해 연찬회 미실시

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 재무국의 사업별 세출예산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재무과 “2020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사업의 ‘사무용 종이류’ 구매에 당초 편성액(927천원) 대비 4.4배(4,051천원)를 사용하였고,
 -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업무추진” 사업의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경비를 당초 편성액(4백만원) 대비 4.8배(19,026천원) 지출하는 등, 사무관리비 9건의 초과 지출액이 4,860만원에 달하는바,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써,
 -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관행처럼 과다하게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당시부터 면밀한 산출 기초 검증을 거친 예산편성 및 문란한 회계처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산 산출기초 한도 초과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

부서	세부사업명	산출기초	예산 현액	지출액	초과 지출액	집행률	초과 집행 사유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 경비	33,000	51,004	18,004	155.6	소모품 구매비 지출
재무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	결산업무추진(집기임차 등)	84,480	88,861	4,381	106.2	
재무과	기본경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927	4,051	3,124	438.0	
재무과	기본경비	소규모 수선비	245	294	49	121.0	
재무과	기본경비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33,840	39,500	5,660	117.7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업무추진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경비	4,000	19,026	15,026	476.7	비대면 원가계산교육 자료 배포
계약심사과	기본경비	소규모 수선비	215	247	32	115.9	
계약심사과	기본경비	도서구입비	300	320	20	107.6	
계약심사과	기본경비	계약심사관련업무처리	18,543	20,845	2,302	113.4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